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697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기관의 의견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4명
2. 제 안 일 : 2025. 4. 10.
3. 회 부 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내 대표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만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는 등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 또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조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 상황에 맞춰 법정이율을 탄

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 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9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채권의 이율을 현행 5%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시장금리·물가상승률·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9조).

현 행	개 정 안
第379條(法定利率) 利子있는 債權의 利率은 다른 法律의 規定이나 當事者의 約定이 없으면 年 5分으로 한다.	第379條(法定利率) ----- -----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가 지체채임을 진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제37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발의 배경

법정이율은 현행법상 민사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 연 6%),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이율(제3조, 연 12%)²⁾ 등으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으며, 이 중 민사법정이율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계속 동일하게 연 5%로 규정되어 왔음.³⁾

민사법정이율은 이자 있는 채권에 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1)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3)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정이율 고정제에 대하여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정함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의 법정이율과 평균금리의 평균 격차는 0.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비록 현재 법정이율이 시장이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법 제379조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헌재 2017. 5. 25. 2015헌바421)

최근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379조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을 정한 민법 제397조 제1항과 연계되어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문제의 균일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민법 제379조가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한 것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2015헌바421 결정이 있었던 2017. 5. 25. 무렵의 시중은행 평균금리(2016년 2.42%, 2017년 2.52%)보다 최근 시중은행 평균금리(2022년 3.53%, 2023년 4.45%, 2024년 4.10%)가 더 높게 형성되어 법정이율과 평균금리의 격차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정이율을 고정제로 할지 아니면 변동제로 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25. 4. 10 자 2021헌바278·366, 2023헌바272·335, 2024헌바52·357·358(병합) 전원합의체 결정)하여 위 선례를 유지한 바 있음.

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의 비율이고,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며,⁴⁾ 개별 법률⁵⁾에 따라 손해액의 현가할인(現價割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비율로도 활용되고 있음⁶⁾.

이러한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의 전보 측면에서 과소배상, 과대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즉, 법정이율이 시장이율보다 높은 경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수록 채권자가 이득을 얻고 채무자가 손실을 입게 되며, 법정이율이 시장이율보다 낮은 경우 채무자는 이득을 얻고 채권자는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음.⁷⁾

민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 시중금리는 경제정책, 시장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정이율 고정제로는 적절한 손해 전보가 어려울 소지가 있

4)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5)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법령들로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등이 있음.

6) 법원은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배상을 명할 때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함.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배상을 명한다면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과잉배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권영준(2013), 법정이율 변동제, 비교사법, 20(1), p.82)

7) 헌법재판소 역시 민법상 법정이율에 대하여 “이 법 제정 당시를 전후하여 수십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법정이율이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은 물론 대출이자율이나 예금이자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법정이율과 현실이자율의 심한 괴리로 말미암아 채권자는 실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채무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이행을 지체하거나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소송촉진등에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49, 2000. 3. 30.).

는바, 법정이율을 경제상황에 맞게 변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⁸⁾

나.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의 장단점

1) 장점⁹⁾

과소배상이나 과다배상이 아닌 적정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시장이율에 의해야 할 것이나, 「민법」은 법적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397조제1항에서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는바,¹⁰⁾ 특칙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이 유사한 수준일 필요가 있음.

법정이율 변동제는 시중이율과 법정이율의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게 할 수 있어 법정이율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회복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도 잘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단점¹¹⁾

법정이율은 지연손해금의 경우처럼 사후적으로 손해를 전보시켜 주

8) 이소은(2022), 법정이율 변동제에 관한 민법 개정 제안, 법조, 71(4), p.9

9) 권영준(2013), 법정이율 변동제, 비교사법, 20(1), pp. 62-63

10)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11) 권영준(2013), 법정이율 변동제, 비교사법, 20(1), pp. 63-64

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금전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이기도 하므로, 법정이율 변동제를 채택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들이 참조할 기준이 변동함에 따라 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개별 사안 및 변동구간별로 각각 달리 산정해야 하므로 법관의 업무 가중 및 사법비용의 증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음.

3) 소결

결국 법정이율 변동제의 도입 여부는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적정한 손해 전보가 되도록 할 필요성과 거래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임.

다. 개정안에 규정된 법정이율 변경주기의 적정성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매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주기는 짧을수록 시장 상황의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정이율 변경주기는 시중금리 변동 추이를 고려한 우리나라 시장 상황의 충실한 반영가능성과 법적안정성 확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과 같이 변동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변동 주기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함으로써 법정이율이 언제 변동하는지, 변동된 법정이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며,¹²⁾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정이율 고정제도를 규정하는 민법 제379조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¹³⁾ 해당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는 “법정이율을 일정한 주기마다 일정한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면, 법정이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 환경의 변화를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정이율 변동의 주기가 일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음.

한편, 법정이율의 변동 주기를 사전적으로 미리 확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점에 개입하여 법정이율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는 의견¹⁴⁾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서 법정이율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경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58차례 변경되어, 연 평균 약 2회 변경되었음.¹⁵⁾

12) 이소은(2022), 법정이율 변동제에 관한 민법 개정 제안, 법조, 71(4), p.32

13) 헌법재판소 2025. 4. 10 자 2021헌바278·366, 2023헌바272·335, 2024헌바52·357·358(병합) 전원합의체 결정 [합헌,각하]

14) 법무부 의견

15) 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현행 민법이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여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변동 주기를 사전적으로 미리 확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가 구체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점에 개입하여 법정이율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하므로, 대통령령의 개정 주기를 법률에 규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법정이율 변동제가 이론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회복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 법재판소에서 현행 민법 제379조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법정이율이 계속 변하게 되면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될 수 있고, 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재판이 지연되거나 사법비용이 증가될 소지도 있으므로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0)6788-5054

< 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단위: %)

연도	일자	기준금리	연도	일자	기준금리
2025	05월 29일	2.5	2011	01월 13일	2.75
2025	02월 25일	2.75	2010	11월 16일	2.5
2024	11월 28일	3	2010	07월 09일	2.25
2024	10월 11일	3.25	2009	02월 12일	2
2023	01월 13일	3.5	2009	01월 09일	2.5
2022	11월 24일	3.25	2008	12월 11일	3
2022	10월 12일	3	2008	11월 07일	4
2022	08월 25일	2.5	2008	10월 27일	4.25
2022	07월 13일	2.25	2008	10월 09일	5
2022	05월 26일	1.75	2008	08월 07일	5.25
2022	04월 14일	1.5	2007	08월 09일	5
2022	01월 14일	1.25	2007	07월 12일	4.75
2021	11월 25일	1	2006	08월 10일	4.5
2021	08월 26일	0.75	2006	06월 08일	4.25
2020	05월 28일	0.5	2006	02월 09일	4
2020	03월 17일	0.75	2005	12월 08일	3.75
2019	10월 16일	1.25	2005	10월 11일	3.5
2019	07월 18일	1.5	2004	11월 11일	3.25
2018	11월 30일	1.75	2004	08월 12일	3.5
2017	11월 30일	1.5	2003	07월 10일	3.75
2016	06월 09일	1.25	2003	05월 13일	4
2015	06월 11일	1.5	2002	05월 07일	4.25
2015	03월 12일	1.75	2001	09월 19일	4
2014	10월 15일	2	2001	08월 09일	4.5
2014	08월 14일	2.25	2001	07월 05일	4.75
2013	05월 09일	2.5	2001	02월 08일	5
2012	10월 11일	2.75	2000	10월 05일	5.25
2012	07월 12일	3	2000	02월 10일	5
2011	06월 10일	3.25	1999	05월 06일	4.75
2011	03월 10일	3			

자료: 한국은행 웹사이트